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12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장(제9조부터 제11조까지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	제7조(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
립·시행) ①·② (생 략)	립·시행) ①·② (현행과 같
	음)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	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
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	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
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	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
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	협의하여야 한다.
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	
을 거쳐야 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	<u><삭 제></u>
제9조(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) 정	<u><삭 제></u>
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	
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	
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	
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	
<u>다)를 둘 수 있다.</u>	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	<u><삭 제></u>
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	
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	
한다.	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	

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.

- ③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 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 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.
- 1.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 인
- 2. 시민·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
- 3.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
- 4.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
-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 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 등) 위원회

<삭 제>

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